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0-183 관련
----------	--------------

발의년월일: 2020. 12.

발 의 자: 채우진 외 1명

1. 수정이유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하여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로 개정한 제3조제1항의 규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칙 안 제1조에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을 2022년 1월 1일부터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회 해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주
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단서 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 ----- . <u>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p>